



제428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국토교통위원회
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《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자율성 확대 》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9141호)

2025. 8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박재유

목 차

I . 정부 제출(제2209141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2
가.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재원 범위 및 자율성 확대(안 제3조)	2

I. 정부 제출(제2209147호)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정부

나. 제 출 일 : 2025. 3. 19.

다. 회 부 일 : 2025. 3. 20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고,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려는 것임.

3. 검토의견

가.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재원 범위 및 자율성 확대(안 제3조)

현행	개정안
제57조(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) ① (생략) ②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~ ⑤ (생략) ⑥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한다.	제57조(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----- -----.

현행법 제57조1)에서는 시장·군수등2)이 공업지역 활성화 및 정비사업

1)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

제57조(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) ① 시장·군수등은 공업지역 활성화 및 정비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
②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방세법」 제112조(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
2.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
3.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
4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6조에 따라 시·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5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6. 정부의 보조금
7. 차입금
8. 해당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,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

③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계획의 수립 비용
2.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조사·연구비
3.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
4.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설·관리 비용

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3)에 따라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
개정안은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하고,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.

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'24.3월부터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조사하였으며, 「도시 공

5.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

6.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

7.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

8. 공업지역 내 폐공장 등 매입 및 활용 비용

9. 제29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수수료

10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④ 시장·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공업지역정비구역 활성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⑥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)

3)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포함하여 22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'25.3.19. 제출하였음.

그 중 「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특별회계의 재원 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 확대 및 자치입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.

또한, 현행법의 경우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2021.1.5. 제정, 2022.1.6. 시행되었으나, 현재까지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상황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지역 정비특별회계 설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.

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자치입법권 확대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하고 회계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581